# 부당이득금반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2016가단229670]



## 【전문】

- 【원 고】주식회사 오마이트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1인)
-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 【변론종결】2019. 2. 21.

## 【주문】

#### 1

- 1. 피고 1은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 11. 기초 사실관계
- 가. 원고는 국외 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5. 11. 4. 설립된 회사로서 '오마이여행', '오마이호텔' 등의 여행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발권대행업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 및 영업 대상은 소외 주식회사 비코트립(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비코티에스',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비코트립')으로부터 영업양도받은 것으로서, 비코트립의 전 경영자이던 소외 15는 2015. 10.경 외국 회사인 DOTW(Destinations Of The Worl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비코트립의 운영권을 양도하되 원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업 부분만을 분리하여 남기기로 하여 위와 같이 일종의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것이었다(그 후 소외 15와 DOTW 사이의 계약이 완결됨으로써 비코트립과 원고는 전혀 무관한 회사가 되었다).

다.

-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은 2009. 10.경 비코트립에 입사한 후 2016. 6.경 아래 라. 마.항의 횡령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발권,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2는 2013. 8.경 비코트립에 입사한 후 2016. 6.경까지 위 ◎◎사업부에서 피고 1의 부하 직원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피고는 소외 12에게 여러 내용으로 해명하였으나 소외 12는 위 피고의 변소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소외 15에게 '위 피고가 항공권대금을 횡령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 마.소외 12는 2016. 6. 24.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1을 상대로 항공권대금의 횡령 여부를 강하게 추궁하였다.
- 위 피고는 원고 회사에 '본인과 피고 2가 2016. 6. 18.와 2016. 6. 19. 양일간 상관의 승인 없이 원고 회사의 발권 정보를 불법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관련한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와 '거래처인 ▽▽▽▽▽와 관련한 미수금 추정액 932,135,500원을 2016.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 (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다.
- 바.피고 1은 위 경위서 및 변제각서를 제출한 후, 피고 2는 2016. 6. 27.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

### [이유]

- 11. 기초 사실관계
- 가. 원고는 국외 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5. 11. 4. 설립된 회사로서 '오마이여행', '오마이호텔' 등의 여행 관련 사이트를 유영하면서 항공권 발권대행업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 및 영업 대상은 소외 주식회사 비코트립(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비코티에스',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비코트립')으로부터 영업양도받은 것으로서, 비코트립의 전 경영자이던 소외 15는 2015. 10.경 외국 회사인 DOTW(Destinations Of The Worl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비코트립의 운영권을 양도하되 원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업 부분만을 분리하여 남기기로 하여 위와 같이 일종의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것이었다(그 후 소외 15와 DOTW 사이의 계약이 완결됨으로써 비코트립과 원고는 전혀 무관한 회사가 되었다).

다.

-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은 2009. 10.경 비코트립에 입사한 후 2016. 6.경 아래 라. 마.항의 횡령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발권,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2는 2013. 8.경 비코트립에 입사한 후 2016. 6.경까지 위 ◎◎사업부에서 피고 1의 부하 직원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 위 피고는 소외 12에게 여러 내용으로 해명하였으나 소외 12는 위 피고의 변소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소외 15에게 '위 피고가 항공권대금을 횡령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소외 12는 2016. 6. 24.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1을 상대로 항공권대금의 횡령 여부를 강하게 추궁하였다.
- 위 피고는 원고 회사에 '본인과 피고 2가 2016. 6. 18.와 2016. 6. 19. 양일간 상관의 승인 없이 원고 회사의 발권 정보를 불법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관련한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와 '거래처인 ▽▽▽▽▽와 관련한 미수금 추정액 932,135,500원을 2016.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 (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다.
- 바.피고 1은 위 경위서 및 변제각서를 제출한 후, 피고 2는 2016. 6. 27.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